

• 21세기 미래문화도시 • 더불어 행복도시 • 사람중심 열린도시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293호 2022. 1. 24.(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93호(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하나래공원 조성사업, 1차))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9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9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04호(공인 폐기 공고) 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15호(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5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4호(도로명주소 고시문) 18

회							
람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서 시행하는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12. 17.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 업 명 :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1차)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25-5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공원녹지과 / ☎032-749-8722)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빌딩 405호 / ☎032-569-7566)
5. 공시송달 대상 :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수용토지의 표시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비고
연수구 선학동 326-5번지, 326-6번지	심○동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	관계인, 공시송달 대상

6. 공시송달 사유 : 주소불명

7.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2. 1. 24. ~ 2. 8. (15일간)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부서별 적정 수준의 인력 배치로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 운영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안 [별표3])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보 건 소)	동
현 정 원	979	644	22	86	227
조 정 (안)	979	641	22	88	228
증 감	-	-3	-	+2	+1

○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안 [별표3])

▶ 일반직 계 : 변동 없음

· 4급 : 8명 ⇨ 7명 (-1)

· 5급 : 60명 ⇨ 59명 (-1)

· 6급 이하 : 905명 ⇨ 907명 (+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 2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실 (☎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toyhy8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동
총 계	979	641	22	88	228
정무직 계	1	1	-	-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974	636	22	88	228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59	33	2	9	15
6급 이하	907	597	19	78	213
연구직 계	1	1	-	-	-
연구사	1	1	-	-	-
별정직 계	3	3	-	-	-
6급 상당 이하	3	3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관련 인용 조문 변경하고, 한시기구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한시기구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안 제7조, 안 제10조)
-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폐지(안 제6조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 2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기획예산
 실(☎749-7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082, FAX 749-7079
- E- mail : toyhy8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개정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안전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로 한다.

제6조2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4조의2제1항·제4항”을 “법 제7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 ----- ----- ----- -----.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제3조(국 등의 설치) ----- ----- 행정안전국, 교육문화자치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제6조의2(한시기구) 유네스코국제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을 둔다.	제6조의2(삭제)
제7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둔다.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② (생략) 제1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u>제4조의2제1항·제4항</u>에 따라 동 을 둔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설치) ①----- <u>제7조제1항·제4항</u>----- -----. ② (현행과 같음)
--	--

관련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 - 104 호

공 인 폐 기 공 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공인 폐기 사유: 통합민원발급기 미사용에 따른 폐기
2. 공인 폐기일: 2022. 1. 21. (금)
3. 공인명 및 인영

☐ 폐기공인 목록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의인 송도4동통합민원5		2.4cm × 2.4cm	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의인 송도4동통합민원5		2.4cm × 2.4cm	세로
송도4동장인 통합민원전용5		2.1cm × 2.1cm	가로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비고
송도4동장인 통합민원전용5		2.1cm × 2.1cm	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의인 송도4동통합민원6		2.4cm × 2.4cm	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의인 송도4동통합민원6		2.4cm × 2.4cm	세로
송도4동장인 통합민원전용6		2.1cm × 2.1cm	가로
송도4동장인 통합민원전용6		2.1cm × 2.1cm	세로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안) 공람 ·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람기간 : 2022년 1월 24일 ~ 2022년 2월 15일(14일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 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032-749-8603),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2-832-8204)
3.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공람
4. 의견서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
5.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내용
 - 가. 사업의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시 행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다. 시 행 면 적 : 26,984.1m²
 -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
 - 마. 사업시행자
 - 1)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상국)
 -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56번길 8-14, 601호
 - 바.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1) 건폐율 : 18.27%, 용적율 : 249.75%, 연면적 : 90,052.17m²
 - 2) 아파트 8개동(지상29층/지하2층) 650세대 및 부대 · 복리시설
 - 3) 용도 : 아파트, 부대 ·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아파트 : 56,105.81m², 부대복리시설 : 32,447.00m², 근린생활시설 : 1,499.36m²
 - 4) 건축면적 : 4,212.87m²

5)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6) 주차대수 : 813대

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도로 3,563㎡, 공원365.9㎡

자. 주요 변경내용

-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세대수(494세대 → 650세대) 및 배치계획 변경

6. 관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의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한 관계기관(부서)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공 랑 의 건 서					
사 업 명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의견 제출인	이해관계	조합원() / 토지및건축물소유자() / 세입자() / 기타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권리명세				
공람의견 내 용					

도로명주소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2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신규 도로명주소

도로명		관련 지번	신규 도로명주소	비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2021.05.24.	송도힐즈로 시작점에서 다섯번째 분기도로	동춘동 63-38	송도 힐즈로5길 11	
2021.05.24.	송도힐즈로 시작점에서 여덟번째 분기도로	동춘동 559-39	송도 힐즈로8길 12	
2021.05.24.	송도힐즈로 시작점에서 아홉번째 분기도로	동춘동 559-32	송도 힐즈로9길 7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749-760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